러시아 연방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
2002 년 1 월 10 일
제 7-ФЗ 호

채택 : 2001 년 12 월 20 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.

동의 : 2001 년 12 월 26 일 상원에 의해 동의됨.

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호혜적인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고,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, 러시아 연방 영토 내 거주하는 국민의 안정적 발전, 삶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천연자원을 소중히 대할 의무가 있다.

본 연방법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, 환경보호부문 법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, 생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과제의 균형적 해결을 보장하는 환경보호부문 정부정책의 법적 기본, 호혜적인 환경, 생물학적 다양성, 천연자원의 보존을 규정한다.

본 연방법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, 대륙붕과 러시아 연방 독점경제 구역 내 지상에서의 삶의 기초가 되고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

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과 기타 활동의 수행 시 발생하는 사회와 자연의 상호작용 부문 관계를 규정한다.

본 법률에 따라 다음이 시행된다.

1. 본 연방법의 시행일부터 다음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. :

- 1991 년 12 월 19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제 2060-1 호. 단 84 조 제외 (본 조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)

- 1992 년 2 월 21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20 조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 2397-1 호

- 1993 년 6 월 2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민의 위생-검역 복지법, 러시아 연방 소비자보호법, 러시아 연방 자연환경보호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 5076-1 호 4 조

- 2001 년 7 월 10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"자연환경보호법 50 조 추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연방법 제 93-Ф3 호.

2. 1991 년 12 월 19 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시행 절차에 관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 회의령 제 2061-1 호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자연환경보호법 84 조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

3. 본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러시아 연방 정부에 관련 시행령을 제출한다.

«목 차»

제 I 장 총칙

제 1 조 기본 개념

제 2 조 환경보호부문 법령

제 3 조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

제 4 조 환경보호 대상

제 II 장 환경보호부문 관리기본

제 5 조 환경보호 관련 관계 부문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기관의 권한

제 6 조 환경보호 관련 관계 부문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권력기관 권한

제 7 조 환경보호 관련 관계 부문 지방자치단체기관 권한

제 8 조 환경보호부문 국가관리를 수행하는 집행권력기관

제 10 조 지방자치단체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환경보호부문 관리

제 III 장 환경보호부문 국민, 사회 단체 및 기타비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

제 11 조 환경보호부문 국민의 권리와 의무

제 12 조 환경보호부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단체와 기타비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

제 13 조 호혜적인 환경에 대한 권리보장에 따른 정부대책시스템

제 장 IV 조 환경보호부문 경제적 규제

제 14 조 환경보호부문 경제적 규제 방법

제 15 조 러시아 연방 경제 발전 부문 연방 프로그램, 러시아 연방 주체의 환경보호부문 목적 프로그램과 환경보호 대책

제 16 조 환경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요금

제 17 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영리 활동

제 18 조 환경 보험

제 V 장 환경보호부문 규정

제 19 조 환경보호부문 규정의 기본

제 20 조 환경보호부문 법규 제정에 대한 요건

제 21 조 환경품질 기준

제 22 조 환경 영향에 대한 허용 기준

제 23 조 물질과 미생물의 방출 및 투하 허용 기준

제 24 조 산업 및 소비 폐기물 형성 기준과 그 배치 한계

제 25 조 환경에 대한 물리적 작용 허용 기준

제 26 조 자연환경 구성요소의 허용철회 기준

제 27 조 환경에 대한 허용인위작용 기준

제 28 조 환경보호부문 기타 기준

제 29 조 환경보호부문 국가기준과 기타 법규문서

제 30 조 환경보호부문 개별 업종에 대한 면허

제 31 조 환경 인증서

제 VI 장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심사

제 32 조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

제 33 조 환경 심사

제 VII 장 경제활동과 기타활동 수행 시 환경부문 요건

제 47 조 방사능물질, 기타 물질과 미생물을 포함한 잠재적 위험 화학물질의 생산, 유통, 처분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34 조 건물, 구조물, 시설물 및 기타 객체의 배치, 설계, 건설, 재건축, 이동, 사용, 보존, 폐지 시 환경보호부문 일반요건

제 35 조 건물, 구조물, 시설물 및 기타 객체 배치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36 조 건물, 구조물, 시설물 및 기타 객체의 설계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37 조 건물, 구조물, 시설물 및 기타 객체의 건설, 재건축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38 조 건물, 구조물, 시설물 및 기타 객체의 가동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39 조 건물, 구조물, 시설물 및 기타 객체의 이용과 이용 중지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0 조 에너지 객체의 배치, 건설, 재건축, 가동, 이용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1 조 군사 및 방호 시설물, 무기, 군 장비의 배치, 설계, 건설, 재건축, 가동, 이용 및 이용 중지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2 조 농업용 객체 이용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3 조 토지 개간, 개간 시스템 및 별도 위치한 수자원 시설물의 배치, 설계, 건설, 재건축, 가동, 이용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4 조 도시 및 농촌 마을의 배치, 설계, 건설, 재건축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5 조 자동차 및 기타 운송수단의 생산과 이동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6 조 석유와 가스산업 설비, 석유, 가스 및 그 가공제품의 재 가공, 운송, 보관, 판매 설비의 배치, 설계, 건설, 재건축, 가동, 이용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8 조 방사능 물질과 핵 재료 사용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49 조 농업과 임업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50 조 부정적 생물학적 영향으로부터 환경보호

제 51 조 산업폐기물과 소비폐기물 처리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52 조 보호 및 방호구역 확정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53 조 재산의 사유화와 국유화 시 환경보호부문 요건

제 54 조 대기 오존층 보호

제 55 조 물리적 작용으로부터 환경보호

제 56 조 자연보호요건 위반에 대한 보상 방안

제 VIII 장 환경재해구역, 비상사태구역

제 57 조 환경재해구역, 비상사태구역 확정절차

제 IX 장 특별 보호 자연물

제 58 조 자연물의 보호방안

제 59 조 자연물 보호의 법적 제도

제 60 조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과 기타 유기체의 보호

제 61 조 도시와 농촌 마을의 식물자원 보호

제 62 조 희귀 및 멸종위기 토양 보호

제 X 장 환경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
(정부 환경 모니터링)

제 63 조 환경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조직 (정부환경모니터링)

제 장 XI 조 환경보호부문 규제
(환경규제)

제 64 조 환경보호부문 규제의 과제 (환경규제)

제 65 조 환경보호부문 정부규제 (정부환경규제)

제 66 조 환경보호부문 국가 감독관의 권리, 의무와 책임

제 67 조 환경보호부문 생산 규제 (생산환경규제)

제 68 조 환경보호부문 지방자치단체 규제 (지방자치단체 환경규제) 와 환경보호부문 사회규제(사회환경규제)

제 69 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객체의 국가 등록

제 XII 장 환경보호부문 학문 연구

제 70 조 환경보호부문 학문 연구

제 XIII 장 환경문화 형성 기초

제 71 조 환경교육의 포괄성과 종합성

제 72 조 교육기관에서 환경지식기초 교습

제 73 조 환경보호부문 기관 경영자 및 전문가 교육과 환경안전교육

제 74 조 환경 계몽

제 XIV 장 환경보호부문 법령위반책임과 환경보호부문 분쟁해결

제 75 조 환경보호부문 법령위반책임 유형

제 76 조 환경보호부문 분쟁해결

제 77 조 환경 유해 완전 보상 책임

제 78 조 환경보호부문 법령위반으로 인한 환경 유해 보상 절차

제 79 조 환경보호부문 법령위반 결과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끼친 손해 보상

제 80 조 환경보호부문 법령 위반자의 업무 제한,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요건

제 XV 장 환경보호부문 국제협력

제 81 조 환경보호부문 국제협력 원칙

제 82 조 러시아 연방 환경보호부문 국제조약

제 XVI 장 결론

제 83 조 본 연방법의 시행

제 84 조 본 연방법에 따른 법규의 시행